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20년 4월 14일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에 따른 조문수정
(안 제2조제1항)
- 제2조제1항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감면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방세 이자상당 가산액 규정 신설(안 제20조제2항)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강근)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공동명의자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취득세 에 대한 조세 감면 기간 및 추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의 공동명의자와 관련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던 용어를 직계혈족으로 재 정의하고,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확대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직계혈족**: 본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말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서,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을 말함. 직계비속과 반대되는 개념

※ **직계비속**: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

- 안 제2조제5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신청 시,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임.
- 이는 현행 규정상 외국인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로 한정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제출로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외국인에 대

해서도 감면 지원을 확대한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 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음할 수 있다.

□ <참고> 최근 3년간 도 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세(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28	13	13	6	8	4	7

- 안 제7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규정한 것임.
 - 특히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게 규정한 것은,
 - 법 제78조의3제1항 및 법 제78조의3제3항에서 감면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2월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감면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감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안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	감면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부동산은 100분의 100 감면	7년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등	그 다음 2년 이내 취득 부동산은 100분의 50 경감	3년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100분의 50 경감	5년
	그 다음 2년 이내 취득 부동산은 100분의 30 경감	2년

- 안 제20조제2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현행 조례의 감면된 취득세 추징 조항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제12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되,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 15.]

□ <참고>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도세 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시군명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	325	5	915	6	709
청주시	6	325	4	322	3	15
충주시	0	0	1	593	3	694

- 부칙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 감면에 대한 적용례)는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감면 적용 시기를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관한 적용례)는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절차상으로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거친 바 문제가 없음.